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2026년 5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재 정 경 제 부
장 관 구 윤 철

●대통령령 제36361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8까지”를 “별표 10까지”로 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9]

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207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	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30,000톤
0207	14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절단육 2. 설육(屑肉) *나. 기타		0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피·곤충			
1602	3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	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삼계탕 이외의 것	0	

비고: 품명란에 “*” 표시된 품목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을 말한다.

[별표 10]

2026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2	냉동한 것			
0203	29	*기타	삼겹살은 제외한다.	0	12,000톤

비고: 품명란에 “*” 표시된 품목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을 말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에 대해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돼지고기에 대해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